

장사시설 폐지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2일
구 분	[]개인 []가족 []종중·문중 []종교단체 []법인		
시 설 종 류	[]묘지 []화장시설 []봉안시설 []자연장지		
허가(신고)번호		허가(신고)연월일	
시 설 명			
소 재 지		전 화 번 호	
설 치·조성자 (대 표 자)	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폐지 연월일			
폐 지 사 유			
폐 지 내 역			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폐지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장사시설 폐지사유서(법인의 경우에는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 의 회의록 사본) 2. 기존 사설묘지,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에 매장·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신·유골이나 유골의 골분(骨粉)에 대한 조치계획서 3. 기존 장사시설의 설치·조성(변경)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
------	---

처리 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